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34

발의연월일: 2023. 1. 5.

발 의 자: 민형배·김경만·김용민

문정복 · 윤후덕 · 이성만

이정문 · 임종성 · 장경태

조오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판결을 법에 반영시켜, 주권자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집회·모임 개최를 금지합니다. 후보자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현수막·광고물의 게시나 인쇄물등의 배부도 불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집회·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신대로 후보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집회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하더라도, 신고된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정 비용 및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현수막과 인쇄물은 게시·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과도하게 제한된

주권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103조, 제256조제3항 및 제261조제3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없다"를 "없으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현수막 및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2호(착용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행위로서 선거구당 그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및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광고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위는"을 "행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및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광고등을 배부·첩

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으로 한다.

제103조제3항 중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을 "야유회(이하 이조에서 "향우회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등 외의 집회나 모임으로서 그 참가 예정 인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장소·주최자·인원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 중 "設置·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者"를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같은 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1조제3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9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의4. 제103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거 짓으로 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 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 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없으며, 정당(창당준비위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 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후단 삭제> 다만, 제1 호(현수막 및 그 밖의 광고물 <u>을 설치·진열·게시</u>·배부하 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2호(착 용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행위 로서 선거구당 그 행위에 소요

1. ~ 3. (생략)

② (생략)

第93條(脱法方法에 의한 文書・) 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 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 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 다)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 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되는 비용 및 수량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
액 및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하고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
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壁報, 사진, 文書・圖畵, 印刷物이나 錄音・錄畵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 (생략)
- ②・③ (생략)
-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 第 ・② (생 략)
 -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④·⑤ (생 략) <신 설>

<u>그 밖에 이와 유사</u>
한 것(이하 "광고등"이라 한다)
<u>으</u>
행위 및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및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u>광고등을 배부·첩부·살포·</u>
<u>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u>
·.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야유회</u>
(이하 이 조에서 "향우회등"이
라 한다)를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

<신 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하다.
-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사. (생 략)

아. 第90條(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을 <u>設置・진열・게</u> 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등 외의 집회나 모임으
로서 그 참가 예정 인원이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
시・장소・주최자・인원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
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설치•

진열 • 게시 • 배부하거나

者 또는 상징물을 제작・ 販賣하거나 하게 한 者

자. ~ 너. (생 략)

2. ~ 4. (생략)

④·⑤ (생 략)

- ①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다.

1. ~ 4. (생략)

<신 설>

4의2. (생략)

<신 설>

5. (생략)

④ ~ ① (생 략)

하게 한 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는 제외한다)-----

자. ~ 너. (현행과 같음)

- 2. ~ 4.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① · ②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4의2. 제90조제1항 단서를 위반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의3.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4의4. 제103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나 모 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 5. (현행과 같음)
- ④ ~ ⑫ (현행과 같음)